

대표목사 청빙

새누리교회에서는 대표목사를 청빙합니다.

1. 자격 : 새누리교회 창립 목적과 비전에 동의하시는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구원간증문), 최종학교 학위(예정)증명서, 안수증명서, 3인의 추천서, 1편 이상의 설교 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3. 제출기한 : 2015년 6월 30일
4. 제출방법 : 우편물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
 - 우편물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0번길 11-16
기독교 한국침례회 새누리교회 청빙위원회
(우) 305-340
 - 전자우편: office@saenuree.or.kr
5. 문의처
 - Tel : (042) 861-8058, 863-0691
 - Fax : (042) 862-4988
 - 전자우편: office@saenuree.or.kr
6.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새누리교회 홈페이지 (<http://www.saenuree.or.kr>)를 참고

=== 아래 (홈페이지 청빙 관련 보충자료) ===

○ 교회연혁

- 1994. 12. 3 김동명 목사 안이숙 사모 간병 차 귀국, 제자훈련을 시작함.
- 1995. 3. 28 김동명 목사 교회개척 발표 후 도미함.
- 1995. 4. 16 부활절 첫 예배를 대덕연구단지 운동장에서 드린 이후 매주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림.
- 1995. 10. 1 극동방송국에서 예배를 대외적으로 드리게 시작함.
- 1995. 11. 2 김동명 목사 교회개척을 위해 귀국, 교회 이름을 ‘새누리교회’로 하고 공식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성지방회에 가입. 매년 11월 첫 주일을 새누리교회 창립 기념일로 정함.
- 1995. 11. 27 김동명 목사 제자훈련(새생명반 2개반과 요한복음반)을 현 예배당 건물인 창조과학관 3층을 임대하여 시작함.
- 1995. 12. 16 창조과학관 3층 예배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림.
(극동방송국 화재로 인해 예배처소를 창조과학관 3층으로 옮김)
- 1995. 12. 31 현 지하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함.
- 1996. 8. 11 이병균 부목사 부임
- 1996. 10. 13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드리게 시작함.
- 1997. 10. 19 안이숙 사모 소천(향년 89세)
- 1998. 5. 17 청년부 예배(오후2시)를 드리게 시작함.
- 1998. 8. 23 장동수 협동목사 임직
- 1998. 10. 11 중등부 예배(오후 10시 40분)를 드리게 시작함.
- 1999. 2. 28 고등부예배(오전 7시30분)를 드리게 시작함.
- 1999. 9. 12 영어예배(오후 4시)를 드리게 시작함. (험프리스 선교사)
- 2000. 3. 17 안진섭 부목사 부임
- 2000. 7. 16 이병균 부목사 사임
- 2001. 4. 29 김동명 목사 담임목사직 사임. 원로목사로 추대
- 2002. 6. 2 비전위원회를 구성함.
- 2002. 8. 25 성도총회에서 새누리교회의 목적, 사명 및 비전을 확정함.
대표목사로 안진섭 목사 임직.

○ 교회연혁 (계속)

- 2002. 12. 1 성도총회에서 새누리교회 분립개척안 확정.
 분립개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기로 함.
- 2003. 1. 5 분립개척 준비위원회 구성하여 2004년 1월 초까지
 총 16차의 분립개척 준비모임을 가짐.
- 2003. 8.10 분립개척에 관한 성도총회에서 분립개척교회의 설립위치를 의결
 함.
- 2004. 2. 1 나기수 목사 부임
- 2004. 3. 14 새누리 2교회 사역자 및 성도 파송예배를 드림.
 새누리 2교회 분립개척. 새누리 2교회 분립 후 첫 예배를 유성구
 지족동
- 2004. 3. 21 명우빌딩 5층 예배당에서 드림.
 교회 현장에 따라 대표 목사를 안진섭 목사로부터 나기수 목사
 로 변경함.
- 2004. 5. 15 새누리 2교회 창립예배를 드림.
- 2004. 5. 30 새누리 2교회와 첫 연합예배를 침신대에서 드림.
- 2005. 1. 9 어린이 영어예배를 시작함.
- 2005. 11. 6 새누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를 드림.
- 2006. 3. 19 장동수 목사 협동목사직 사임
- 2007. 5. 6 청년대학부 예배를 3부예배로 개방함.
- 2007. 11. 3 남보현 전도사 목사 안수
- 2008. 1.28 남보현 목사 교육목사로 임직
- 2008. 12.21 강호 목사 협동목사로 임직
- 2009. 9. 20 나기수 대표목사 사임
- 2009. 9. 21 남보현 대표목사 직무 대행
- 2011. 6. 20 남보현 목사 대표목사 대행 마침
- 2011. 6. 21 이병균 목사 대표목사 부임
- 2013. 10. 12 새누리3교회 분립·개척 (임진산 목사)
- 2014. 11. 9 백호익·유성한 전도사 목사 안수
- 2014. 12. 22 이병균 대표목사 소천

* 2015. 현재 출석 교인수 : 약 380명 (청장년: 280명, 주 연령대는 40~60세)

* 현재 교회 예산 규모: 약 8억원/연

○ 교육 프로그램

- 유아부, 유치부, 초등1부, 초등 2부
- 중고등부, 영어예배부
- 청년대학부, 장년부

○ 기타

청빙에 관한 개별적인 문의 시에는 별도로 교회에서 답변서를 준비하여 신청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새누리교회 전경 사진>

새누리 헌장 및 규약

1995. 11. 기독교 한국침례회 가입 시 작성
 팔로알토 침례교회를 참고로 작성
1997. 2 새누리헌장 및 내규 발표 (성도총회)
2000. 12 새누리헌장 수정제안 (팀 목회에 대한 의견수렴)
2002. 8. 25 팀 목회에 대한 내규 추가 및 축조심의 통과 (성도총회)
2002. 12. 1 분립개척에 대한 내규 추가 통과 (성도총회)
2004. 10. 18 헌장위원회 심의 및 수정
2004. 10. 20 운영위원회 심의 (새누리 헌장 및 규약)
2004. 11. 10 홈페이지 및 목장 공고 및 의견수렴 시작
2005. 1. 30 의견수렴 및 설명회
2005. 2. 12 의견수렴 및 설명회
2005. 2. 13 성도총회 상정
2009. 1. 21 전임목사 임기 및 재계약관련 규약 개정안을 제직회에서 심의 후
 발의하도록 결정 (운영위원회)
2009. 2. 8 전임목사 임기 및 재계약관련 규약 개정안 논의 개시 (제직회)
2009. 3. 29 전임목사 임기 및 재계약관련 규약 개정안 통과 (제직회)
2009. 5. 10 전임목사 임기 및 재계약관련 규약 개정 수정안 통과 (성도총회)
2009. 5. 20 전임목사 임기 및 재계약관련 규약 최종문안 결정 (운영위원회)
2009. 7. 5 전임목사 임기 및 재계약관련 규약 최종문안 보고 (성도총회)
2010. 1. 31 전임목사 관련 규약 개정안 통과 (성도총회)

새누리교회 헌장

2010. 1. 31 개정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새누리교회**를 이루고, 착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섬기는 착한 목자를 양성하는 교회를 이루는 기본 규범과 원칙을 담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새누리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지재단 소속으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성지방회에 가입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의 착한 양되게 하며, 착한 양들이 착한 목자가 되도록 훈련하여 전교인의 목자화를 이루며, 이를 바탕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제4조 비전 및 사명

본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하여

- (1) [성숙]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계속적으로 교육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고양시킨다. 또한,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2) [성장] 본 교회는 대형교회를 지양하고, 분립·개척을 통하여 이 땅에 ‘착한양·착한목자’를 배출할 수 있는 목자 양성소를 증가시킨다.

제5조 교회의 사역원리

- (1) 본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의 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음의 복음,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교회사역의 기본원리로 한다.

새누리교회 규약

제 1 조 의식

본 교회는 침례식과 성찬식을 행한다.

(1) 침례식 :

가. 침례를 받을 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야 한다.

나. 침례식은 침수례로 한다.

다. 침례식은 목사(전임목회자) 혹은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인정된 자에 의해 거행된다.

(2) 성찬식 :

가. 성찬식에 참여할 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야 한다.

나. 성찬식 인도는 목사(전임목회자) 혹은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인정된 자에 의해 거행된다.

제 2 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 교회의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서적 침례(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등록된 후, 새생명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서받은 탕자로서의 신앙고백과 규약을 포함한 본 교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본 교회의 회원은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운영위원회 및 교회학교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실행부서에 참여하여 신앙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신을 본 교회의 비전에 따른 전문 사역자로 개발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자격 상실] 회원 자격의 상실은 교회에 그 자격의 포기를 알린 자와 별도의 기준으로 정 한 자로 한다.

제 3 조 전임목회자 (청빙, 인사, 계약, 임기)

본 교회의 전임 목회자는 청빙에 의한 전임목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전임목사 그리고 전임전도사를 청하며 그 청빙, 계약, 임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청빙에 의한 전임목사

가. [자격]

전임목사의 자격은 본 교회의 목적, 사명, 운영 방법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침례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자로 한다.

나. [청빙]

본 교회의 청빙에 의한 전임목사는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제직회에서 의결되고,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청빙된다.

다. [계약 및 임기]

① 전임목사는 처음 3년간 계약으로 청빙되며, 그 이후에는 4년 (1년 안식년 포함) 후 재계약하되 안식년 6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첫 안식년이 종결되면 7년 (1년 안식년 포함) 재계약하되 안식년 6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7년 (1년 안식년 포함) 재계약 임기 제도를 계속 반복한다. 재계약 시 포함된 안식년은 차기 재계약 여부에 영향 받지 않는다. 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정년이 다한 경우 그 임기는 종결된다.

② 전임목사는 매 6년 사역후 1년간의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③ 전임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라. [안식년]

안식년에는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임목사 신분은 유지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마. [투표방법]

전임목사 재계약 투표는 사무처리회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교회의 대표목사

가. 청빙에 의한 전임목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대표 목사직을 수행한다.

(3) 인사위원회를 통한 전임목사

가. [자격]

전임목사의 자격은 본 교회의 목적, 사명, 운영 방법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침례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자로 한다.

나. [인사]

본 교회의 인사위원회를 통한 전임목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제직회에서

의결하고, 성도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 임명된다.

다. [임기 및 재임명]

전임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인사위원회 내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임목사의 해임,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해임은 제직회에서 의결되고 성도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4) 전임전도사

가. [자격]

전임전도사의 자격은 본 교회의 목적, 사명, 운영 방법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침례 교단에서 전도사 시취를 받은 자로 한다.

나. [계약 및 임기]

본 교회의 전임전도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제직회에서 의결하고, 성도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 임명된다. 재임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내규에 따른다.

제 4 조 시간제목회자 및 협동목회자, 유급간사 (자격, 청빙, 계약, 임기)

본 교회는 시간제목회자 및 협동 목회자와 유급간사(관리간사, 행정간사)를 둘 수 있다.

(1) 시간제 목회자

가. [자격]

본 교회의 목적, 사명, 운영 방법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나. [계약 및 임기]

계약 및 해임은 해당위원회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협동목회자(협동목사 및 협동전도사)

가. [자격]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 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 교회의 목적, 사명, 운영 방법에 동의하며, 은사에 따라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자로 한다.

나. [청빙 및 해임] 청빙 및 해임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성도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3) 유급간사(관리간사, 행정간사)

가. [자격]

본 교회의 목적, 사명, 운영 방법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나. [계약 및 임기]

계약 및 해임은 해당위원회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누리목자 및 목장목자

본 교회의 목자의 자격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

누리목자 및 목장목자는 사역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은 회원중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로 인선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무

누리목자 및 목장목자는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위임받은 누리 및 목장의 회원들을 섬기는 사명을 각각 감당한다.

제 6 조 회의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통하여 운영된다.

(1) 사무처리회(성도총회)

가. 성격

성도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위원회 및 기관은 사무처리회(성도총회)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리회(성도총회)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 또는 세부 실행에 대하여 별도의 기구(해당 운영위원회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구성

본 교회의 18세 이상의 회원으로 제 2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다. 소집과 의무

① [정기 사무처리회(성도총회)]

예결산 심의 및 인준, 인선(위원장, 누리목자, 목장목자, 교사 등)에 관한 인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② [임시 사무처리회(성도총회)]

현장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 전임목회자 청빙 필요 결정, 청빙 및 해임, 안수여부결정, 협동목회자 청빙의 결정, 지교회 설립, 예배당 건축 및 이전(임대장소 및 면적 포함) 등을 포함하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소집된다. 단, 임시 사무처리회(성도총회)는 20인 이상의 서면 발의시, 혹은 대표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된다.

라. 의결정족수

인사 및 인선에 대한 안건, 예산에 관한 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기타 중요 안건은 사안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정한다.

마. 사회

사무처리회(성도총회) 사회는 대표목사 혹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직회의

가. 구성:

제직회의는 목회자, 위원장, 교회학교 부장, 누리목자, 목장목자, 성가대장, 여성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의무:

목회자들을 도와 교회의 영적 생활 향상과 교회 부흥에 솔선수범하며 교회현장 및 규약의 개정제의, 조직 신설 및 변경, 목회자 선임 및 해임 발의, 전임목회자 청빙필요 제안, 중요 교회자산의 취득 및 처분(임대, 차량 등), 예산심의(기수립예산 10% 초과 시 재심의 포함), 회원자격심의, 선교사 선정 및 파송, 교회학교운영(안)심의 및 결정, 선교/구제 및 주요 위원회 방향 결정 등 사무처리회(성도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제반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성도 총회에 수시로 보고한다.

다. 회의 소집:

정기 제직회의는 작성하는 시일에 대표목사 또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단, 임시 제직회의는 대표목사, 운영위원회가 필요시,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 시 소집한다. 제직회의 회의성립 정족수는 정원의 과반수이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 반수로 한다.

(3) 운영위원 회의

가. 구성: 위원장(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나. 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 임무:

- ① 운영위원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며, 필요시에는 그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②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인사위원회, 인선위원회, 그 밖의 임시위원회(청빙위원회, 건축위원회 포함) 설치 및 구성, 예산발의, 유급사역자 급여결정, 교회자산(예금 등을 포함) 관리 감독, 예배순서 등 회원전체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사무처리회(성도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수행한다.

라. 회의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 회의의 운영방식 등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조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 각 위원회는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한다. 단, 다음의 항에서 열거되는 각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의결이 없이 상설위원회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내규 변경 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

(2) 구성

가. 예배 위원회: 예배 준비, 진행, 안내, 헌금 및 주보 등 예배 및 의식을 담당한다.

나. 교육 위원회: 교회 학교, 교육 계획, 교사 및 목자 훈련 계획, 수련회 준비를 담당한다.

다. 국내선교 위원회: 국내 선교 및 전도를 담당한다.

라. 해외선교위원회 : 해외 선교 및 전도를 담당한다

마. 목양 위원회: 목장목자 육성 및 관리 계획을 담당한다.

바. 새가족 위원회: 새신도 및 새가족 인도, 환영, 심방, 등록 및 교회 소개를 담당한다.

사. 관리 위원회: 재산 관리, 시설 관리 및 비품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한다.

- 아. 재정 위원회: 현금 관리,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보고 등 회계 전반을 관리한다.
- 자. 기록출판 위원회: 제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홈페이지 관리, 교회 역사 수집관리 및 서기 업무와 녹화, 녹음, 사진 촬영 및 게시판 정리를 담당한다. 교재 준비, 도서 관리 및 도서 출판 계획을 담당한다.
- 차. 친교봉사 위원회: 친교, 봉사 및 경조사 업무등 교회 행사를 담당한다.
- 카. 나눔위원회: 구제 및 장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한다.
- 타. 음악위원회 : 예배를 위한 찬양 및 교회의 찬양을 전담한다.
- 파. 여선교회

(3) 위원회 회원 및 위원장의 자격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이라야 하며, 임기와 자격 등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여선교회의 경우, 여선교회 회장)과 부위원장(여선교회의 경우, 여선교회 부회장) 등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인선위원회

(1) 구성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2인, 위원장 2인, 교사 2인, 여선교회 1인, 그리고 목자실 추천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한다.

(2) 임기 및 역할

인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서 교사, 성가대원, 성가지휘자, 반주자, 목장 목자, 감사, 위원장 등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선정하여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 인준을 위하여 추천한다. 책임자의 선정방법과 절차는 인선위원회의 내규에 따르고, 내규 변경 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

제 9 조 인사위원회

(1) 구성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1인, 위원장 1인, 교사 2인, 여선교회 1인, 그리고 목자실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2) 임기 및 역할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시간제목회자와 유급간사(관리간사, 행정간사) 선임과 해임 결정 후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 보고하거나, 인사위원회를 통한 전임목사, 전임전도사, 협동목회자 청빙여부 결정을 위한 후보자의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 추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세부 운영은

인사위원회 내규에 따르고, 내규 변경 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

제 10 조 청빙위원회

(1) 구성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사 2인, 위원장 2인, 교사 2인, 여선교회 1인, 그리고 목사실 추천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한다.

(2) 임기 및 역할

청빙위원회는 전임목사 청빙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청빙후보를 선정하여 제직회의와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인준을 위하여 추천한다. 세부사항은 청빙위원회 내규에 따르고, 내규 변경 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

제 11 조 분립·개척

(1) 분립·개척되는 교회는 본 교회의 목적, 사명 등을 공유하며, 형제 교회로서 서로 긴밀히 협조 한다.

(2) (분립·개척 시기) 주일예배 참석 인원수(성인 기준)가 300-500 명 정도 되었을 경우 교회의 분립·개척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분립·개척 여부는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결정한다.

(3) (구성, 존속기간) 분립·개척이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결정되는 즉시, 새누리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킨다. 위원회 구성원은 대표 목사, 분립 개척과 관련이 밀접한 5인의 위원장과 5명의 자원자 대표로 하며, 운영위원회에 구성을 위임한다. 새누리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는 분립·개척되는 교회의 창립 1년 후까지 존속한다.

(4) (재정) 분립개척과 자립에 필요한 재정은 본 교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새누리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다.

(5) (분립·개척되는 교회의 참여 가정)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새누리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한다.

(6) 새누리교회 분립·개척 준비위원회는 세부 분립·개척안을 만든 후 사무처리회(성도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7) 분립·개척으로 인하여 새로운 목회자의 청빙이 필요할 경우에는 목회자 청빙절차를 바로 시작하도록 한다. 새로운 목회자의 청빙은 사무처리회(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청빙 위원회가 추천한 분을 성도 총회에서 결정하며,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대표목사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12 조 회계 감사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매년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한다. 감사는 교회 회계 상황을 수시로 감사하고, 1년에 2번 이상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제 13 조 개정

본 규약의 개폐에 대한 발의는 20인 이상의 서면 요청 또는 운영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2주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부칙)

본 규약은 사무처리회(성도총회)에서 결의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홈페이지 보충자료 끝 ===